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	법 제64조	600	800	1,000

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다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라.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마.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.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.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의2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·수입한 경우 사의3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의4.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·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	제1항제1호 법 제64조 제1항제2호 법 제64조 제1항제3호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법 제64조제2항제1호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3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4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2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5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3	600 600 600 180 600 600 180 600 180	800 800 800 240 800 800 240 800 240	1,000 1,000 1,000 300 1,000 1,000 300 1,000 300	
--	---	--	--	--	--

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의5.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·수입·판매·보관 ·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64조 제2항제1호 의4	180	240	300
사의6.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 고 허가물질을 제조·수입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6	600	800	1,000
사의7.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·수 입·사용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7	600	800	1,000
아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 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4호	600	800	1,000
자. 삭제 <2021. 3. 30.> 차. 삭제 <2021. 3. 30.> 카. 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5호			
1) 사업장의 명칭·대표자 또는 사무 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		300	400	500
2) 1)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		600	800	1,000
타.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 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2항제3호	180	240	300
타의2.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5호 의2	600	800	1,000

파.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6호	600	800	1,000
하.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64조 제2항제3호의2	180	240	300
거.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, 해임, 퇴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7호	600	800	1,000
너.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2항제4호	180	240	300
더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·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8호	600	800	1,000
러.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9호	600	800	1,000
머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10호	600	800	1,000
머의2. 법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10호의2	600	800	1,000
머의3. 법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·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, 선임받은 업무 등 이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10호의3	600	800	1,000
버.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	법 제64조	600	800	1,000

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, 관계 공무원의 출입·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	제1항제11호			
서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·보 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64조 제2항제5호	180	240	300